

# 서울특별시의회 민원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관련 2396
----------	------------

제안년월일 : 2025년 3월 6일  
제안자 : 운영위원장

## 1. 수정이유

- 조례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‘의회신문고’에 대한 용어 정의와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, 약칭 사용의 오류, 상위법령과의 체계상 적합하지 않은 민원 불수리 사항 등의 내용을 수정함.

## 2. 수정의 주요내용

- ‘서울특별시의회’를 ‘의회’로 하고 ‘의회신문고’를 ‘의회신문고(인터넷을 통하여 민원을 신청·접수 받아 처리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)’로 수정함(안 제3조제4항).
- 민원 불수리 사항에서 ‘민원인이 민원 처리 담당자에게 폭언·폭행 및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민원을 제기하여 신체적·정신적 피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’를 삭제함(안 제4조제1항제8호 삭제).
- ‘서울특별시의회 홈페이지 내 의회신문고’를 ‘의회신문고’로 수정함(안 제7조제3항).

### 3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」
- 예산조치 : 비용추계 비대상
- 기타사항 : 「수정안조문대비표」 참조.

# 서울특별시의회 민원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의회 민원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3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④ 사무처장은 시민의 민원 신청 편의를 위하여 의회 홈페이지에 의회신문고(인터넷을 통하여 민원을 신청·접수 받아 처리할 수 있는 정보 시스템을 말한다)를 운영할 수 있다.

안 제4조제1항제8호를 삭제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제1항제7호 및 제8호” 를 “제1항제7호” 로 한다.

안 제7조제3항 중 “서울특별시의회 홈페이지 내 의회신문고” 를 “의회신문고” 로 한다.

## 수정안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안
<p>제3조(민원 접수 및 관리)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① ~ ③ (생략)</p> <p>&lt;신설&gt;</p>    <p>&lt;신설&gt;</p>    <p>제4조(불수리 사항) ① 사무처장은 민원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수리하지 아</p>	<p>제3조(민원 접수 및 관리)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① ~ 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 사무처장은 시민의 민원신청 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의회 홈페이지 내 의회신문고를 운영할 수 있다.</p>    <p>⑤ 사무처장은 민원 처리와 관련하여 알게 된 민원의 내용과 민원인 및 민원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특정인의 개인정보 등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, 수집된 정보가 민원 처리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.</p> <p>제4조(불수리 사항) ①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.</p>	<p>제3조(민원 접수 및 관리)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① ~ ③ (개정안과 같음)</p> <p>④ 사무처장은 시민의 민원 신청 편의를 위하여 의회 홈페이지에 의회신문고(인터넷을 통하여 민원을 신청·접수 받아 처리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)를 운영할 수 있다.</p>    <p>⑤ (개정안과 같음)</p>    <p>제4조(불수리 사항) ① 사무처장은 민원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수리하지 아</p>

니한다.

1. ~ 7. (생략)

<신설>

② 사무처장은 제1항제 1호부터 제6호까지 해당하는 민원에 대하여는 그 취지를 민원인에게 통지하며, 제1항제7호의 경우에는 이를 폐기한다.

제7조(처리결과 통지) ①  
· ② (생략)

③ 인터넷으로 접수된 민원은 처리결과를 인터넷에 게재함으로써 민원인에게 통지한 것으로 본다.

1. ~ 7. (현행과 같음)

8. 민원인이 민원 처리 담당자에게 폭언·폭행 및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민원을 제기하여 신체적·정신적 피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

② 사무처장은 제1항제 1호부터 제6호까지 해당하는 민원에 대하여는 그 취지를 민원인에게 통지하며, 제1항제7호 및 제8호의 경우에는 이를 폐기한다.

제7조(처리결과 통지) ①  
· ② (현행과 같음)

③ 서울특별시의회 홈페이지 내 의회신문고로----- 의회신문고에 -----  
-----  
-----.

니한다.

1. ~ 7. (개정안과 같음)

<삭제>

② 사무처장은 제1항제 1호부터 제6호까지 해당하는 민원에 대하여는 그 취지를 민원인에게 통지하며, 제1항제7호의 경우에는 이를 폐기한다.

제7조(처리결과 통지) ①  
· ② (개정안과 같음)

③ 의회신문고로-----  
----- 의회신문고에  
-----  
-----.

## 서울특별시의회 민원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의회 민원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④ 사무처장은 시민의 민원신청 편의를 위하여 의회 홈페이지에 의회신문고(인터넷을 통하여 민원을 신청·접수 받아 처리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)를 운영할 수 있다.

⑤ 사무처장은 민원 처리와 관련하여 알게 된 민원의 내용과 민원인 및 민원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특정인의 개인정보 등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, 수집된 정보가 민원 처리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.

제7조제3항 중 “인터넷으”를 “의회신문고”로, “인터넷에”를 “의회신문고에”로 한다.

제9조제1항 중 “위원회”를 “민원인이 민원 공개를 동의한 경우에만 위원회”로 한다.

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3조(민원 접수 및 관리) ① ~ ③ (생략)  <u>&lt;신 설&gt;</u></p> <p><u>&lt;신 설&gt;</u></p>	<p>제3조(민원 접수 및 관리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  <u>④ 사무처장은 시민의 민원신청 편의를 위하여 의회 홈페이지에 의회신문고(인터넷을 통하여 민원을 신청·접수 받아 처리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)를 운영할 수 있다.</u>  <u>⑤ 사무처장은 민원 처리와 관련하여 알게 된 민원의 내용과 민원인 및 민원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특정인의 개인정보 등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, 수집된 정보가 민원 처리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.</u></p>
<p>제7조(처리결과 통지) ①·② (생략)            ③ <u>인터넷으로</u> 접수된 민원은 처리결과를 <u>인터넷에</u> 게재함으로써 민원인에게 통지한 것으로 본다.</p>	<p>제7조(처리결과 통지) ①·② (현행과 같음)            ③ <u>의회신문고</u>-----            ----- <u>의회신문고에</u> -----            -----            ---.</p>
<p>제9조(민원내용 활용) ① 의장은</p>	<p>제9조(민원내용 활용) ① -----</p>

접수된 민원의 내용과 처리 결과를 위원회 및 해당지역 의원에 알려주어 의정활동에 참조  
·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.

②·③ (생략)

-----  
--- 민원인이 민원 공개를 동의한 경우에만 위원회 -----  
-----.

②·③ (현행과 같음)